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44
----------	------

발의년월일 : 2017. 8. 22.  
발의자 : 이상숙 의원 외 10명

## □ 주 문

- 재외동포로서 외국국적동포의 인정 범위를 직계비속 제3세대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재외동포로서 제3세대 이후의 외국국적동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함.

## □ 제안이유

-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인 “외국국적동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외국국적동포”的 경우는 대통령령에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여야 한다고 직계비속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직계비속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한민족의 풋줄을 이어받은 “3세대 이후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되어 자신의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을 왕래할 수 있는 권리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절벽으로 인해 국력과 국가발전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어 그 대안과 해결방안을 마련해야만 하는 우리나라를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한 상황으로 “3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도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과 한민족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재외동포법 개정이 꼭 필요한 실정임.

**□ 결의안 : 덧붙임 1**

**□ 관련 참고자료 :**

- 해당없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인 “외국국적동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외국국적동포”的 경우는 대통령령에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여야 한다고 직계비속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직계비속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3세대 이후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되어 자신의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을 왕래할 수 있는 권리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등 독립국가지역(CIS)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은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하였던 한인들의 후손으로 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귀환하지 못하고 수십 년 간 망향의 한과 각종 차별 및 생활고를 겪

으며 살아오고 있는 우리 민족으로, 소련 붕괴 이후 그 후손들이 ‘잘사는 할아버지 · 할머니의 나라’ 한국에 속속 입국하여 국내 거주 고려인의 경우 안산시에 1만여 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7만여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고려인 3세 부모를 따라 한국에 입국한 고려인 4세 청소년은 안산에 400여 명, 전국적으로는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외국국적동포로서 인정되는 직계비속의 범위를 3세대까지로 제한하는 현행법 상 이들은 고려인 3세인 부모의 비자가 재외동포비자(F4)면 만 24세, 취업비자(H2)면 만 19세까지만 국내 체류가 허용되어 성인이 된 자녀들이 부모와 헤어져야 하는 생 이별의 아픔까지도 겪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법에서 1945년 정부 수립 이전에 외국으로 나간 재외동포를 1세대로 간주하면서 4세대는 재외동포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 국내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싶어 하는 재외동포 4세를 외국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인적자원적 측면에서 재외동포는 또 하나의 국력이며 국가 경쟁력 발전적 제고의 근간으로 독일이나 이스라엘 등은 이미 빠르게 세계 각국의 있는 자국 동포들에 대한 적극적 포용정책을 실시하여 조국으로의 귀환을 돋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저출산 시대 인구절벽

으로 인해 국력과 국가발전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어 그 대안과 해결방안을 마련해야만 하는 우리나라로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며 국적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재외동포가 늘 한국인이라는 의식을 염두에 두고 사는 일상이 되도록 하는 정책, 마음으로 고국을 지원하고 싶어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조속히 마련되어져야 한다.

이에 “3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도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과 한민족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재외동포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74만 안산시민과 함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7. 8. .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